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-1조제1항 중 “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”를 “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전자금융업무”로 한다.

제4-3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

제4-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매매, 그 밖의 거래”를 각각 “금융투자상품의 거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였거나 증권을 환매하는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한 내역 이외에 월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
5. 제4-77조제7호에 따른 맞춤형 자산관리계좌(Wrap Account)에 대하여 법 제99조에 따라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한 경우

제4-37조제2항 후단 중 “투자자에게”를 “투자자에게 영 제70조제1항제2호의 방

법으로”로 한다.

제5-1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

제5-18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영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증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-1조(겸영업무) ① 영 제43조제3항 제10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”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말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4-36조(매매거래 등의 통지) ① 영 제7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영 제7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으로 매매성립내용을 통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4-37조(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등)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</p>	<p>제4-1조(겸영업무) ① ----- ----- -----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전자금융업무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-36조(매매거래 등의 통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</u>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-37조(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등) ① -----</p>

개업자는 월간 매매,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·손익내역, 월말잔액·잔량현황,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·예탁재산잔고·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(이하 “월간 매매내역등”이라 한다)을 다음 달 20일까지, 반기동안 매매,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·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영 제7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·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.

1. ~ 3. (생략)

<신 설>

----- 금융투자상품의 거래-----

----- 금융투자상품의 거래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였거나 증권을 환매하는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한 내역 이외에 월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침,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

1. (생략)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

가. ~ 다. (생략)

<신설>

③·④ (생략)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영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
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정
부가 발행하는 국채증권

③·④ (현행과 같음)